



# 안사회계법인 · 829-7575

## 세계재경저널 Answer

eAnSe.com ··· 2024/2/5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개념구분	근로소득자(종속고용)	사업소득자(독립활동)
업무방법	임금목적 근로 제공(한 직장 종속성)	일의 완성계약(겸직 등 독립성)
근거법률	근로기준법(1년 당 30일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없음(민법 제664조의 도급, 위임계약)
세법규정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부가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퇴직금	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일시금)	규정 없음(개별계약으로 가능)
지급의무, 수급권리	동일직장 1년 이상 근무시	별도 근거없음(자유직업활동자와 지급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함)
실제분쟁문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으로 보장되며 쌍방 불일치나 제소 없음	동일직장 1년 이상 활동시, 퇴직금 청구하는 경우 있음
지급시의 소득분류	퇴직소득	퇴직일시금도 사업소득임
계산방법	임원 : 2011년까지는 규정대로 +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수 + 2020년부터는 2배수 일반직원 : 근로기준법 기준 등 1배수로	총지급액 3.3% 원천징수 된 후 수입수익자가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연당 300만원 등 2. 환산급여공제 : 3억원 초과시 35%	총수입금액 - 실제소요비용 = 퇴직시의 사업소득

- 안사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